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정(안) 주요 내용

- 농지개량행위를 위한 신고절차 마련(안 제52조의3 관련)
-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의 범위 및 성토기준 등 구체화(안 별표1 관련)

□ 주요 변경사항

- 농지개량행위 신고 절차 등(신설)

구분	주요 내용
신고대상	▶ 「농지법」 제41조의3에 따라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
신고방법	▶ 농지개량 신고서(안 별지 제57호의2 서식)를 관할 인·허가기관에 제출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농지개량 신고서 관련 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 : 사업시행자, 사업시행 기간, 개량 농지 위치, 개량 높이·깊이·면적·흙 반입/반출량/반출처 등이 포함된 문서 2. 농지 소유권 입증이 가능한 서류(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사용승낙서 3.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성토의 경우) 4. 피해방지 계획서(인근 농업경영, 시설 등의 피해가 예상 되는 경우) 5.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 </div>
검토사항 (인·허가기관)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확인(신고인이 개량 예정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 ▶ 「농지법」 제41조의2에 따른 농지개량기준 준수 여부 ▶ 농지개량행위에 따른 토사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수립 여부
처리기간	▶ 15일 이내에 농지개량 신고증 배부(검토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고 제출서류 반려)
제재사항	▶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농지를 성토 또는 절토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농지법」 제60조제2호) - 원상회복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여 가능(「농지법」 제42조 및 제63조)
처리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bottom: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농지개량 신고서 및 관련 서류</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해당 지자체 제출</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검토</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농지개량 신고증 (신고인에게 배부)</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width: 100%;">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text-align: center;">신고자</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text-align: center;">지자체</div> </div>

○ 농지 성토 관련(변경)

구분		현행	개정(안)
공통사항		▶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	▶ 농지의 생산성 향상 등 농지 개량의 목적에 적합할 것
		▶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변경, 토사의 유출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	▶ 농지개량 행위로 인해 농지 개량 시설이나 도로의 폐지·변경·이용 방해, 토사의 유출 및 배수·통풍 장애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주택 등 인근 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성토 기준	대상	▶ 「건설폐기물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중 순환토사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u>순환토사</u> 및 다른 법령에서 농지 성토용으로 허용한 재활용 토사
	사용 기준	▶ (신설)	▶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 (해당 농지의 토양을 농작물 경작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의 부지에 한해 사용 가능 ※ 농지 및 농작물 경작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 제외
	준수 사항	▶ 순환토사를 사용하여 성토하려는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는 사용 불가 ▶ (신설)	▶ (삭제)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유지(溜池: 웅덩이),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 등